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-17호

「강릉시 향교·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12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향교·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강릉시 향교·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, 역사문화 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책무 등 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지원 및 대상, 지원범위 및 규모, 사업수행 장소 등 (안 제4조~제6조)
- 다. 지원신청, 지원기간 및 제외 등 (안 제7조~제8조)
- 라. 환수, 결과보고 등(안 제9조~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033
- 팩스: 033-640-4070

4. 참고사항

- 강릉시 향교·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강릉시 향교 · 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릉시 향교 · 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, 역사문화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향교”란 강릉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고려 · 조선시대 왕조(王朝)국가에서 지방에 선현(先賢)에 대한 석전과 유생(儒生)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기관
 - 나. 강원도가 「향교재산법」 제3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이 관리 운영하며, 같은 법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의 문화교육 및 발전 등에 기여하는 시설
2. “서원”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조선시대 중기 이후 개인이 지방에서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기관
 - 나. 강원도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70조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한 시설
3. “영당(影堂)”이란 이름난 이의 화상(畫像)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시설로 소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당(祠堂)을 말한다.
 - 가. 강원도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7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
 - 나. 그 밖에 시장이 특히 지방문화 · 예술적 보존가치를 인정하는 시설

제3조(책무 등) ① 강릉시장(이 조례에서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전통 문화·예술적 가치가 있는 향교·서원 및 영당의 문화유산을 전승·보존하고, 시민(시의 주민을 말한다. 이 조례에서 같다)과 관광객에게 그 향유(享有)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향교·서원 및 영당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 문화·예술유산의 보존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,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 및 대상) ① 시장은 향교·서원 및 영당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(이하 “활성화사업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향교·서원 및 영당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범위 및 규모) ① 활성화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교사양성

가. 강학교육

나. 인성교육

다. 예절교육

라. 의례교육

2. 문화행사

가. 전시 및 공연

나. 한시·한문 등의 경연

3. 전통의례

가. 석전, 제향

나. 기로연, 향음주례,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

다. 전통혼례, 성년례 등의 관·혼·상·제 관련 의례

4. 그 밖에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.

제6조(사업수행 장소) ① 향교·서원 및 영당은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활성화사업을 그 시설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 장소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1. 학교, 도서관, 경로당
2.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
3. 시민단체 또는 읍·면·동장이 요청하는 장소
4. 시의 문화예술, 자연경관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
5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제7조(지원신청) ① 향교·서원 및 영당은 활성화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,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1. 신청사업의 적정성
2. 시민의 정신문화·전통문화 향유에 미치는 영향
3. 지원출처별 비용사용의 투명성
4. 종교적·정치적 목적 해당여부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향교·서원 및 영당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활성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.

제8조(지원기간 및 제외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원기간을 차등화 할 수 있다.

1. 계속지원 사업

2. 단기 또는 중·장기지원 사업

② 시장은 향교·서원 및 영당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과 중복되는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.

제9조(환수) ① 시장은 향교·서원 및 영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
2. 법령·조례 또는 시장의 지도·감독사항을 위반한 경우

3. 해당 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가. 천재지변이나 질병확산 등의 사유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

나. 수혜자나 회원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

4. 지원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
5.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된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

② 제1항의 환수에 응하지 않는 향교·서원 및 영당에 대하여 그 환수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제10조(결과보고) ① 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은 향교·서원 및 영당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

한다.

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개요 및 내용
2. 성과 및 평가
3. 현장사진
4. 지출내역 영수증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준용)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